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장

제127호 2015. 12. 28(월)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 2015 - 1550 호 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1

고 시

○ 남원시 고시 제 2015 - 108 호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고시..... 8

회 람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2015 - 1550호

『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28일
남 원 시 장

**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- 자율형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일반계 공립학교와 3배 차이가 나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장학금 지원의 최대한을 정하고,
- 예산의 범위를 넘어 다수자가 경합할 경우 재임기간이라는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이·통장 재임기간으로 정함(안 제4조 제1항)
- 나. 장학금 지원의 최대한도를 도 조례상 수업료로 정함(안 제6조단서)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8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04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○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(☎063-620-60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 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한”을 “자녀 장학금의 지급에”로, “규정한다”를 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자의”를 “사람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”를 “사람으로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함에”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시장”을 “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”을 “경우에는 이·통장 재임기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”으로, “1월 이내에”를 “1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연간 시 관내”를 “연간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최대한도로 하며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제1항 본문 중 “1월이내”를 “1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수도”를 “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학생에 대하여

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”를 “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하나”를 “하나에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상실한 때”를 “상실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받았을 때”를 “받았을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시의”를 “남원시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 고등학생수의 균형, 학교간의 균형, 읍·면·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 관내 이·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.

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

-----.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-----
연간 -----
----- 범위
-----.

제6조(장학금액) -----

-. 다만, 「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최대한도로 하며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-----
----- 1개월 이내-----
-. -----
-- 경우에는 -----
- 수 -----.

② -----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-----
-----.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-----

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- 1. 보호자인 이·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
- 2. 삭제
- 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- 4.·5. (생략)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)

- ① (생략)
-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, 보조금으로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사람이 -----
- 하나에 ----- 경
우에는 -----
--.

- 1. -----
상실한 경우
- 2. 삭제
- 3. -----
----- 받았을 경우
- 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에 따
른 -----
- 경우에는 -----
-----.

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남원시
의 -----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 시
행에 -----
-----.

남원시 고시 제2015-108호

2015년 12월 18일 남원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.

2015. 12. 22.

남 원 시 장

1. 예산총괄

(단위:천원)

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	
		소계	공기업	기타
514,534,619	472,921,166	41,613,453	33,957,562	7,655,891

2. 분야별 예산내역

□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분야별	2016년 예산액	2015년 예산액	증 감 액	비고
계	472,921,166	466,543,934	6,377,232	
일반공공행정	15,842,307	14,475,720	1,366,587	
공공질서및안전	3,073,430	2,439,319	634,111	
교육	4,425,682	4,577,442	△151,760	
문화및관광	30,188,159	34,886,641	△4,698,482	
환경보호	21,778,737	19,962,552	1,816,185	
사회복지	128,540,199	121,857,473	6,682,726	
보건	8,463,338	8,043,680	419,658	
농림해양수산	111,635,707	111,733,937	△98,230	
산업·중소기업	7,554,224	10,367,265	△2,813,041	
수송및교통	24,581,617	15,381,850	9,199,767	
국토및지역개발	30,820,496	38,718,714	△7,898,218	
과학기술	988,938	780,021	208,917	
예비비	5,508,273	5,767,197	△258,924	
기타	79,520,059	77,552,123	1,967,936	

□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회계별	2016년 예산액	2015년 예산액	증 감 액	비고
계(7개)	41,613,453	40,226,256	1,387,197	
의료보호비	1,876,237	1,838,190	38,047	
농공단지조성	1,485,335	1,863,836	△378,501	
주민소득사업	1,955,247	1,681,710	273,537	
신정지구개발사업	2,030,585	720,000	1,310,585	
주차장사업	308,487	296,500	11,987	
하수도공기업	18,859,333	18,826,810	32,523	
상수도공기업	15,098,229	14,999,210	99,019	